



학교안전공제중앙회  
School Safety and Insurance Federation



# 2022년 학교배상책임공제 시행 안내

피공제자(학생·교직원·교육활동참여자)가 안전한 학교!  
피공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**학교배상책임공제 제도**가  
이렇게 달라집니다.



# 학교 직원 노무업무 중 발생한 제3자 인적·물적 사고도 보상해드려요!



예초작업



쓰레기 분리수거



학교급식 조리

※ 시설물 관리업무를 제외한 학교장 지시에 따른 노무업무

## 시설물 관리업무란?

「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부터 제7호에서 정의한 교육시설안전사고 및 교육시설의 안전·유지관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

## 교육시설안전사고 및 교육시설의 안전·유지관리 활동 중 발생한 사고란?

교내 수목의 전정작업 중 떨어진 나뭇가지에 의한 차량 파손, 교내 배수로, 맨홀 뚜껑 등의 결함에 의한 차량 파손, 강풍 등으로 인해 창문이 떨어져 주차된 차량이 파손된 사고 등 교육시설의 훼손·결함 등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.



# 차량 파손사고 청구는 곧바로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 청구하세요!

개정 전



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차량 수리비용 선 결제 후 관련자료(수리 전·후 사진, 견적서 등)를 준비하여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 청구

개정 후



수리비 온라인 청구시스템을 통해 수리 업체에서 학교안전공제중앙회로 관련자료 직접 송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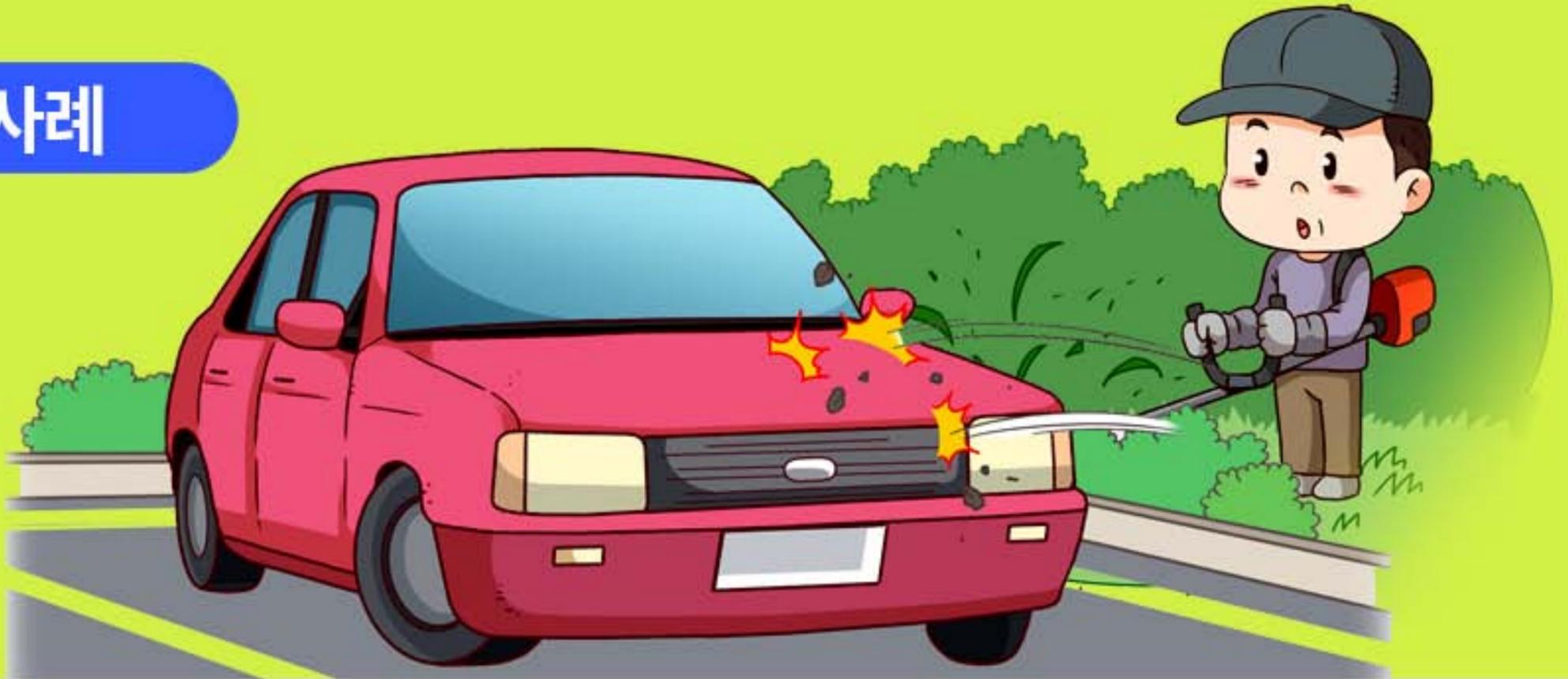
공제가입자(학교장)는 정비업체 등에서 수리비 온라인 청구시스템을 통해 사전에 수리내용(견적서 등)에 대하여 중앙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려야 합니다.

※ 승인절차: 차량 정비업체 입고 → 정비업체는 수리비 온라인 청구시스템을 통하여 공제중앙회에 견적서 등 송부 또는 유선통지 → 승인(공제중앙회)



# 안전불감증 사고 예방을 위해 이렇게 바꿨어요!

사례



예초작업 반경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, 차량 이동 조치 없이  
진행되어 파편에 의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

개정 전

적정손해액 보상

개정 후

적정손해액의 **30% (가해자 부담분)**  
**공제 후** 보상



※ 학교배상책임공제 약관 제10조제5항에 따라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 
대인·대물 손해를 입힌 경우 자기부담금 설정

# 도덕적 해이 사고 예방을 위해 이렇게 바뀌었어요!



## 사례

경미한 파손(기스, 광택 또는 도색손상 등)의 경우에도  
부품 교환 수리, 사고로 인한 차량 파손 외 인접부위 수리

## 개정 전

사고로 인한 파손 부위 수리비용 인정

## 개정 후

과잉청구방지를 위해 경미한 파손의 경우, 교체 및 파손  
인접부위에 대한 편승수리 불인정

※ 공제가입자(학교장)는 피해자에게 정비업체 등에서 수리비 온라인 청구시스템을 통해 사전에 수리내용(견적서 등)에 대하여 중앙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려야 함

# 휴대품 관리소홀 등의 사고 예방을 위해 이렇게 바꿨어요!

휴대품?



분실피해 보상한도 설정

휴대품 1대당 100만원 한도로 보상  
 ※ 휴대품 피해 손해배상 특별약관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용 월수를 감안하여 감가상각 적용

< 관리소홀 등에 따른 피해보상 제외 >

- 학교의 학칙에 따르지 아니하고 임의로 수거한 경우
- 교사 개인 소지, 교탁, 개인서랍 등에 방치 또는 보관한 경우
- 보관 장소에 시건장치가 없는 경우
- 시건장치의 열쇠 등을 교사 외 타인이 사용한 경우
- 휴대품을 담당교사 임장 하에 수거, 반환 또는 이동하지 아니한 경우

